

이직확인서 제출요구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제43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4항에 의한 이직확인서 제출 요구 대상자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사업주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 6. 10.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1. 건 명: 이직확인서 제출 요구
2. 근 거: 고용보험법 제43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제4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사업장명 (성 명)	사업장 관리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 내용	공시송달 사유
주식회사 부**크 (고**라)	863-86-01030-0 (1979.12.28.)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하 생략)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	·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 · 관련 근거 법령 안내 · 미제출 시 과태료 고지 · 「이직확인서」 서식 첨부	동 서류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었기에 공시송달하고자 함

4. 공 고 기 간: 2024. 6.10.~2024. 6.25.(15일간)
5. 문 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 용인고용복지+센터 최순주 주무관(☎ 031-289-2203)